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4년 12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윤기환 생활제품안전과장, 이용현 연구관(043-870-5453)

모든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받아야 판매 가능해진다.
- 내년 6. 4. 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모든 제품 대상 -
- 12. 1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6. 4. 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내년 6. 4.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4. 12. 9. ~ '15. 2. 5.) 하고,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안예고 한다.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모든 어린이제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공통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이가 자칫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을 규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취지와 시행내용, 안전기준(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12. 16.(화)에 건설기술회관에서 연다.

○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정한 6개 시험인증기관*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전화 02-2164-0148/9, FAX 02-2634-1007, 이메일 jenoh@ktr.or.kr)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주요 제정내용
2. 설명회 개최안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이용현 연구관(☎ 043-870-5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 제정내용

※ 일반공산품에서 어린이제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을 별도 분리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적용**

□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확대**

○ 危害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은 정부지정 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이외의 모든 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 **안전성 조사 방법 규정 및 危害사실 공표전 산업부장관에 고지**

○ 안전성 조사결과를 신문·방송, 안전정보망 등에 공표하고, 危害 의심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공공기관을 정함

□ **수거등의 권고·명령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수거등의 명령·권고·공표 대상범위, 중대결함의 범위를 규정하고, 수거등의 권고·명령 사실의 공표를 신문·방송 등에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업무 수행과 사고조사의 절차·방법을 규정**

○ 현장조사·감정, 사고정보 조회 등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관련 제품 시험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소비자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병원, 보험회사 등에게 안전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방법을 규정**

○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일 수준으로 규정

□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등**

○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표시방법, 신청서류를 정하고, 세부 지정 기준과 방법·절차는 국표원장이 고시함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6.4)에 따라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12.11일 현재 사전접수 참가신청 : 380명
* 신청 : 전화 02-2164-0148/9, FAX 02-2634-1007, 이메일 jenoh@ktr.or.kr

□ **개 요**

○ 일 시 :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13:30 ~ 17:30

○ 장 소 : 건설회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 관 : 호서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행사일정 및 내용**

일 정	발표 내용	발표자
13:30 ~ 14:30	참가자 등록	-
14:30 ~ 14:40	인사말	제품안전정책국장
14:40 ~ 15:10	어린이제품안전 관리제도	생활제품안전과 이용현연구관
15:10 ~ 15:40	어린이제품 위해도 평가	호서대학교
15:40 ~ 16:00	휴식시간	-
16:00 ~ 16:3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발(안)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16:30 ~ 17:00	어린이제품 개별안전기준 개발(안)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7:00 ~ 17:10	설문지 작성	-
17:10 ~ 17:30	질의응답	-

참고 3 제품안전 인증제도 요약

□ 제도 개요

○ 제품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분석하여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단계로 분류하여 차등화 관리

* 안전인증 : 국내·외 제조업자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을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안전확인 : 제조(수입)업자가 지정된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공급자적합성확인 :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유통시키는 제도

□ 제품안전 단계별 관리제도 소개

제도 및 관리수준	안전인증 (높음)	안전확인 (규제 강도)	공급자적합성확인 (낮음)	
안전인증	안전인증신청 (제조업자) ▶ 공장심사+제품시험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정기검사 (인증기관)			인증번호
	* 안전인증 후에는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실시			
안전확인		제품시험 (인증기관) ▶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인증기관) ▶ 판 매		신고번호
		* 제품시험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후, 판매 (공장심사·정기검사 면제)		
공급자적 합성확인			자체 제품의 안전성확인 ▶ 판 매	
			*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후 유통시키는 방식	

□ 관리대상 제품군 및 소관법령

구분	대상품목	관련 법령
일반공산품	압력밥솥, 노인용품, 스포츠용품 등 일반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합계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 4 품공법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되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제도명	품목명
안전인증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확인	어린이용 섬유제품(유아용, 아동용), 스포츠용 구명복, 스케이트보드, 운동용 안전모(롤러스포츠보호장구) 보행기, 유아용의자, 유모차,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침대,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기저귀, 완구, 유아용 삼륜차, 학용품, 온열팩
공급자적합성확인	물안경, 가죽제품, 바퀴달린 운동화, 롤러스케이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스키용구,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면봉, 우산 및 양산 , 가구, 킥보드, 안경테, 선글라스